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 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 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 KOSPI2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 KOSPI2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의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81067)				
(종류)클래스	A	A-e	C	C-e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1107	AP710	59656	AP711	AP3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 좌

-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81067)				
(종류)클래스	A	A-e	C	C-e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1107	AP710	59656	AP711	AP3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등록사항
2006.08.28	최초설정
2007.07.12	약관변경 : 일반사무보수인하
2008.03.21	약관변경 : "종류형"으로 변경 (Class A 수익증권 추가)
2008.05.06	약관변경 : 투자대상에 주식선물추가
2009.05.03	약관변경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유리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0.05.03	1. 약관변경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반영 및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교부 방법 변경 2. 약관변경 : 판매보수인하 3.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과세방법 변경 반영
2010.07.28	규약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06.13)에 따른 투자신탁 임의해지사유 변경
2010.09.03	결산갱신
2011.10.07	결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등
2012.11.16	-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결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등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2014.02.21	- S클래스(펀드온라인코리아 판매 전용 클래스) 신설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2014.03.05	- A-e 클래스, C-e 클래스 신설
2014.12.01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및 기타 자구 정정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u>2015.09.24</u>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동일 종목 투자 한도 변경 등) - 주식 투자한도 보완(주식에 60%이상 →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이상) - 투자회사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보다 긴 임의의 기간을 투자기간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대표전화 : 02-2168-79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5.09.01 기준, 단위: 개, 억)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책임 운용 전문 인력	한진규	1969	퀀트 운용 본부장	59	9,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경영공학 학사 - KAIST 금융공학 박사 - '95.02~'99.01. 한국투자증권 - '00.02~현재. 당사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박주호	1969	퀀트 운용 팀장	47	9,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 경영학과 - '95.01~'99.08. 한진증권 - '99.08~현재. 당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4개), 규모(2,241억)]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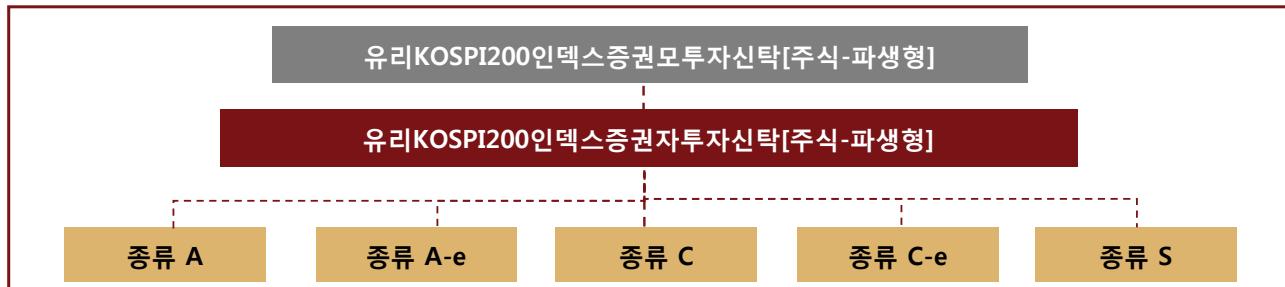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한진규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2006.08.28)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주호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2006.08.28) ~ 현재

주) 2015.09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 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가입자격	설정일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는 수익증권	2008.03.24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2014.03.12
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006.08.28
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2014.03.12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2014.04.22

-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종류	수수료			보수 (연간,%)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사무 관리
A	납입금액의 0.8%	-	-	0.433	0.22	0.03	0.015
A-e	납입금액의 0.4%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 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0.433	0.11	0.03	0.015
C	-	-		0.433	1.00	0.03	0.015
C-e	-	-		0.433	0.50	0.03	0.015
S	-	3년미만 환매시		0.433	0.30	0.03	0.015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유리개인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미만 등
투자목적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추구하며 일부 초과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KOSPI200 인덱스 복제 전략 및 일부 초과수익 전략 수행
주요 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스프레드 위험, 베이시스 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KOSPI200 (목표주가지수)에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이득 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구분	투자비중	세부내용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90% 이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고유재산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만,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구분	투자비중	세부내용
주식 및 <u>주식관련장내파생상</u> 품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법 제8조의2제4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8조의2제4항의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금리스왑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수익증권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 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고유재산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만,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상기 투자비율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
동일종목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p> <p>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p>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u>라.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u></p>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p>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	

	다.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장기 자본이득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200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목적한 바대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투자방침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의 변동률에 근접한 성과의 달성을 위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다만, 추적오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SPI200 구성 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지수추종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부분복제기법을 이용하여 비교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부분복제기법이란 추적오차를 감안하여 비교지수 구성종목의 일부를 추출하고, 추출된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비중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수추종기법을 의미합니다.
-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종목별 구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 초과수익추구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일정 수준 비교지수와 다르게 구성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해 스왑거래, 이벤트를 활용한 종목별 매매, 스프레드 매매 및 장단기 시장흐름에 따른 비중조절 등 다양한 초과수익 추구 전략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추적오차관리전략

- 비교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적오차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추적오차가 주어진 허용범위(1일 기준 0.5%)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 후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합니다.

○ 현금성자산 운용전략

-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은 원활한 환매대응과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자금증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증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4영업일 이내의 콜거래를 통하여 운용합니다.

※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목적한 바대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전략]

- 운용역 개인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내부의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여러 주식의 주가수준을 종합한 지수인 비교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가 수준 하락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 시에는 이 투자신탁의 가치 역시 비교지수의 하락에 그대로 노출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의 상대적 운용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KOSPI200을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KOSPI200지수는 한국거래소를 대표하는 200종목으로 구성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수익률 추이가 일반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선물·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바, 이와 관련한 대표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textcircled{O} \text{ 비교지수 : KOSPI200 지수} \times 100\%$$

※ 한국종합주가지수200 (Korea Stock Price Index200, KOSPI200)에 대한 설명

- 주가지수 개요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되는 지수
 - 지수산출기관 : 한국거래소
 - 기준일 및 기준지수 : 1990년 1월 3일 = 100pt
 - 지수산출방식 : 유동주식수만 가중한 시가총액방식
 - 구성종목 변경방법
 - ✓ 정기변경 : 매년 1회 KOSPI200 선물시장의 6월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경된 종목으로 지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경
 - ✓ 특별변경 : 지수구성종목 중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피흡수, 합병 등의 사유로 KOSPI 200 구성종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변경
- ⇒ 지수산출방식 등 지수에 관한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한국종합주가지수200 (Korea Stock Price Index200, KOSPI200)"은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한국거래소의 서비스표입니다.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절

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이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증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이러한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만큼 당해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 주식 시세의 등락 및 배당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평가손익 등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주식의 시세는 해당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급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경제·정치·자연·사회·문화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할수록,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클수록 주식의 시세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투자신탁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비교지수의 성과와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 보다는 '비교지수의 성과'로부터 월등히 높은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KOSPI200지수]의 성과와 유사한 성과의 달성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바, 비교지수의 성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매시점의 비교지수가 매입시점의 비교지수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큰 투자수익이 발생하며, 반대로 환매시점의 비교지수가 매입시점의 비교지수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자본이득, 배당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1항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합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으로 이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시세가 항상 크게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여러 주식의 주가수준을 종합한 지수인 추적대상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가 수준 하락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 시에는 이 투자신탁의 가치 역시 추적대상지수의 하락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 93조에 따라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금융투자상품,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리변동 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매비용 과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 부채권매도 및 운용 관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위험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내용
추적오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실제운용여건과 지수산출 조건과의 차이, 시장상황변화, 초과수익추구를 위한 포트폴리오 변경, 부분복제법 실행에 따른 추적대상지수와 실제포트폴리오의 종목 구성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에 대한 추종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비교지수의 성과와 이 투자신탁의 성과의 차이가 목표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등 특정 투자대상과 다른 투자대상간의 가격 차이의 추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바, 이러한 가격 차이의 추세가 예상과 달리 실현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시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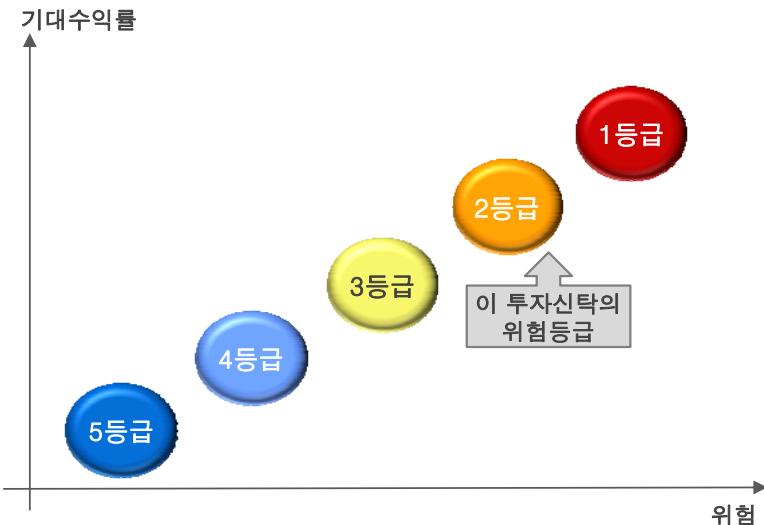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환매가격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을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의도한 투자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해지 과정에서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규모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것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거래위 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 제한,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대량환매 위험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용 교란 위험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그 시세가 항시 변동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되고 큰 규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리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을 5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 손실가능 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시장 대표성을 지니거나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추구하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및 인핸스드 인덱스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 손실가능 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③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④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해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통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수익증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투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빈번한 환매는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증가 및 운용에 대한 교란 등을 야기하여 투자성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 및 투기적인 단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이익을 현저히 하락시키며, 수익증권의 잦은 매매는 높은 환매수수료를 유발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환매수수료	A	없음	환매시
	A-e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 C-e, S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주)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자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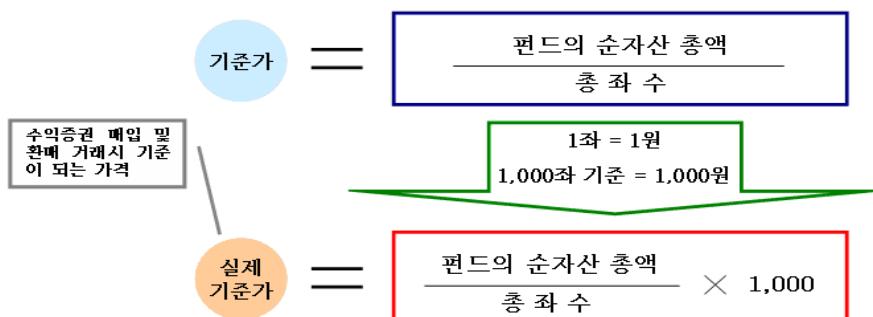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자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p>다. 신용평가업자</p> <p>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p> <p>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p> <p>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p> <p>4. 환율</p> <p>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p>
--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예상배당금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추정 예상배당금과 회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결정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시가형성 전 상장신주식	<p>①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구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기준일을 영업년도말로 보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p> <p>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p> <p>③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미상장주식은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p> <p>④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p>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외화표시상장주식/상장채무증권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매각제한 투자재산 등	<p>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대상자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 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표시재산
-------------	---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p>위원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간사 : 평가담당부서장(주무 부서장)</p>
회의소집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기능	<p>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결방법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청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8%	-	-	-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4%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지급시기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며 상기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집합투자규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 (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 용(피투자 집합투자 기구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A	0.433	0.22	0.03	0.015	0.003	0.701	-	0.071
A-e	0.433	0.11	0.03	0.015	0.002	0.590	-	0.070
C	0.433	1.00	0.03	0.015	0.003	1.481	-	0.071
C-e	0.433	0.50	0.03	0.015	0.000	0.978	-	0.071
S	0.433	0.30	0.03	0.015	0.000	0.778	-	0.079
부과 기준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기간 : 2014.08.28~2015.08.27]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기간 : 2014.08.28~2015.08.27]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종류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A	151	304	473	976
A-e	100	230	373	797
C	152	479	839	1,909
C-e	100	316	554	1,261
S	80	251	441	1,00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매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Class S의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고, 환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달라서 상기 수수료 및 보수·비용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lass S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실제 환매시점에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예시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및 수수료 현황]

- 유리개인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	수수료			보수 (연간,%)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사무 관리
C	-	-	-	0.433	0.90	0.03	0.015
C-e	-	-	-	0.433	0.45	0.03	0.015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단계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

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1)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9 기	-	회계감사적용 면제대상
제 8 기	-	회계감사적용 면제대상
제 7 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대차대조표			
항목	제9기 (2015.08.27)	제8기 (2014.08.27)	제7기 (2013.08.27)
운용자산	13,552,478,249	13,417,186,107	19,991,233,340
유가증권	13,507,538,959	13,407,146,756	19,984,489,192
현금 및 예치금	44,939,290	10,039,351	6,744,148
기타자산	35,607	178,069,460	109,497,502
자산총계	13,552,513,856	13,595,255,567	20,100,730,842
기타부채	35,535,712	965,522,994	100,163,243
부채총계	35,535,712	965,522,994	100,163,243
원본	15,610,675,982	12,629,732,573	20,520,852,647
이익조정금	-2,093,697,838	0	-520,285,048
자본총계	13,516,978,144	12,629,732,573	20,000,567,599

요약순익계산서

항목	제9기 (2014.08.28~2015.08.27)	제8기 (2013.08.28~2014.08.27)	제7기 (2012.08.28~2013.08.27)
운용수익	-1,210,937,451	2,010,850,932	150,450,506
이자수익	259,633	129,632	20,306,792
매매/평가차익(손)	-1,213,795,218	2,008,020,255	124,773,844
기타수익	2,598,134	2,701,045	5,369,870
운용비용	168,163,355	230,390,220	322,278,000
관련회사보수	167,818,325	229,981,210	320,629,928
매매수수료	0	0	259,352
기타비용	345,030	409,010	1,388,720
당기순이익	-1,379,100,806	1,780,460,712	-171,827,494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매매회전율	0	0	95.59
-------	---	---	-------

-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상기의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9기 (2015.08.27)	제8기 (2014.08.27)	제7기 (2013.08.27)
운용자산	13,552,478,249	13,417,186,107	19,991,233,340
현금및예치금	44,939,290	10,039,351	6,744,148
현금및현금성자산	44,939,290	10,039,351	6,744,148
유가증권	13,507,538,959	13,407,146,756	19,984,489,192
수익증권	13,507,538,959	13,407,146,756	19,984,489,192
기타자산	35,607	178,069,460	109,497,502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91	178,065,665	109,485,650
미수이자	35,416	3,795	11,852
자 산 총 계	13,552,513,856	13,595,255,567	20,100,730,842
기타부채	35,535,712	965,522,994	100,163,243
해지미지급금	192	127,583,709	33,472,204
미지급운용수수료	12,390,327	14,241,714	20,532,952
미지급판매수수료	21,832,945	29,036,490	43,161,294
미지급수탁수수료	858,482	986,780	1,422,655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429,256	493,392	711,358
수수료미지급금	24,510	848,580	862,780
미지급이익분배금	0	792,332,329	0
부 채 총 계	35,535,712	965,522,994	100,163,243
원 본	15,610,675,982	12,629,732,573	20,520,852,647
이익잉여금	-2,093,697,838	0	-520,285,048
자 본 총 계	13,516,978,144	12,629,732,573	20,000,567,599
부채 및 자본 총계	13,552,513,856	13,595,255,567	20,100,730,842
총좌수	15,610,675,982	12,629,732,573	20,520,852,647
기준가격	865.88	1,000	974.65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목	제9기 (2014.08.28~2015.08.27)	제8기 (2013.08.28~2014.08.27)	제7기 (2012.08.28~2013.08.27)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	-1,210,937,451	2,010,850,932	150,450,506	
투자수익	2,857,767	2,830,677	25,676,546	
이자수익	259,633	129,632	20,306,792	
수수료수익	2,598,134	2,701,045	5,369,754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94,285,288	2,008,269,353	2,414,549,965	
지분증권매매차익	194,285,288	943,797,913	1,510,747,862	
파생상품매매차익	0	0	513,375,000	
지분증권평가차익	0	1,064,471,440	390,427,10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08,080,506	249,098	2,289,776,121	
지분증권매매차손	242,611,143	249,098	1,641,745,951	
파생상품매매차손	0	0	648,030,170	
지분증권평가차손	1,165,469,363	0	0	
기타운용수익	0	0	116	
운용비용	168,163,355	230,390,220	322,278,000	
운용수수료	57,735,105	74,044,678	99,291,794	
판매수수료	104,083,055	148,241,368	211,019,134	
수탁수수료	4,000,114	5,130,111	6,879,335	
사무수탁수수료	2,000,051	2,565,053	3,439,665	
매매수수료	0	0	259,352	
기타운용비용	345,030	409,010	1,388,720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1,379,100,806	1,780,460,712	-171,827,494	
좌당순이익(또는좌당순손실)	-98.17	107.82	-7.5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5.08.27 기준, 단위:억 좌,억 원)

구분	기간	기간초잔고		재투자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투자 신탁 (전체)	2012/08/28~2013/08/27	255	279	0	0	89	89	140	144	203	201
	2013/08/28~2014/08/27	203	201	0	0	56	59	136	145	123	135
	2014/08/28~2015/08/27	123	135	0	0	173	161	141	137	155	136
A	2012/08/28~2013/08/27	23	25	2	2	25	24	21	21	29	28
	2013/08/28~2014/08/27	29	28	0	0	44	46	54	57	19	20

	2014/08/28~2015/08/27	19	20	1	1	134	123	88	85	66	57
C	2012/08/28~2013/08/27	235	253	19	19	19	19	96	99	176	172
	2013/08/28~2014/08/27	176	172	0	0	12	13	82	85	107	113
	2014/08/28~2015/08/27	107	113	6	6	12	11	39	38	87	75
A-e	2014/03/12~2014/08/27	0	0	0	0	1	1	0	0	0	0
	2014/08/28~2015/08/27	0	0	0	0	7	7	5	5	3	3
C-e	2014/03/12~2014/08/27	0	0	0	0	0	0	0	0	0	0
	2014/08/28~2015/08/27	0	0	0	0	1	1	0	0	1	1
S	2014/04/22~2014/08/27	0	0	0	0	0	0	0	0	0	0
	2014/08/28~2015/08/27	0	0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15.09.01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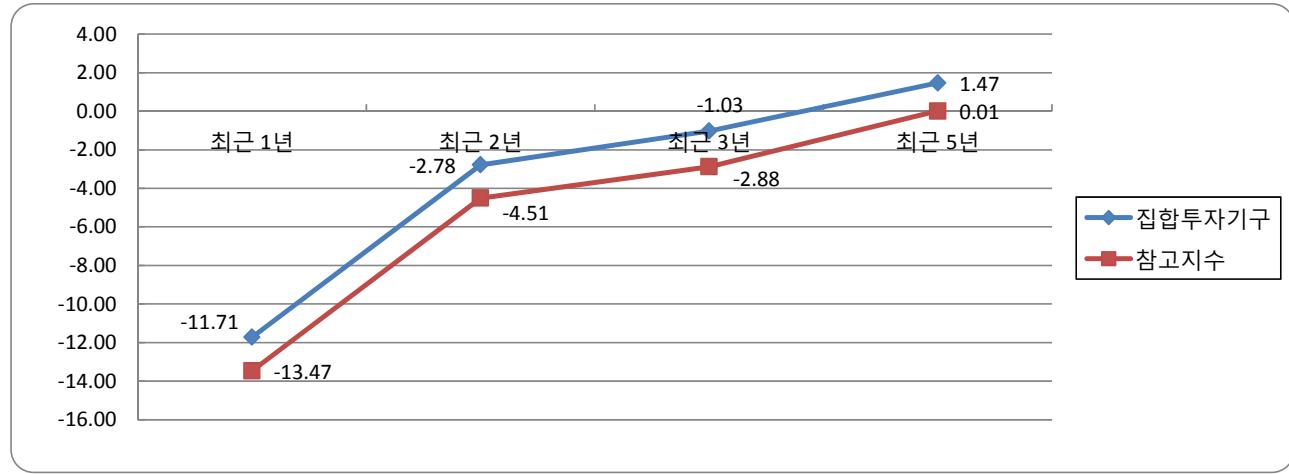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4/09/02~ 2015/09/01	2013/09/02~ 2015/09/01	2012/09/02~ 2015/09/01	2010/09/02~ 2015/09/01	2006/08/28~ 2015/09/01
투자신탁(전체)	-11.71	-2.78	-1.03	1.47	5.31
비교지수	-13.47	-4.51	-2.88	0.01	3.21
Class C	-13.03	-4.21	-2.48	-0.03	4.00
비교지수	-13.47	-4.51	-2.88	0.01	3.21
Class A	-12.34	-3.46	-1.72	0.76	2.24
비교지수	-13.47	-4.51	-2.88	0.01	1.22
Class S	-12.40	-	-	-	-7.88
비교지수	-13.47	-	-	-	-8.96
Class A-e	-12.24	-	-	-	-5.96
비교지수	-13.47	-	-	-	-6.99
Class C-e	-12.59	-	-	-	-6.32
비교지수	-13.47	-	-	-	-6.99

주1) 비교지수 : KOSPI200 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2015.09.01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09/02~ 2015/09/01	2013/09/02~ 2014/09/01	2012/09/02~ 2013/09/01	2011/09/02~ 2012/09/01	2010/09/02~ 2011/09/01
투자신탁(전체)	-11.71	7.05	2.58	2.22	8.55
비교지수	-13.47	5.37	0.47	3.38	5.65
Class C	-13.03	5.50	1.08	0.70	6.90
비교지수	-13.47	5.37	0.47	3.38	5.65
Class A	-12.34	6.31	1.87	1.50	7.78
비교지수	-13.47	5.37	0.47	3.38	5.65
Class S	-12.40	-	-	-	-
비교지수	-13.47	-	-	-	-
Class A-e	-12.24	-	-	-	-
비교지수	-13.47	-	-	-	-
Class C-e	-12.59	-	-	-	-
비교지수	-13.47	-	-	-	-

주1) 비교지수 : KOSPI200 지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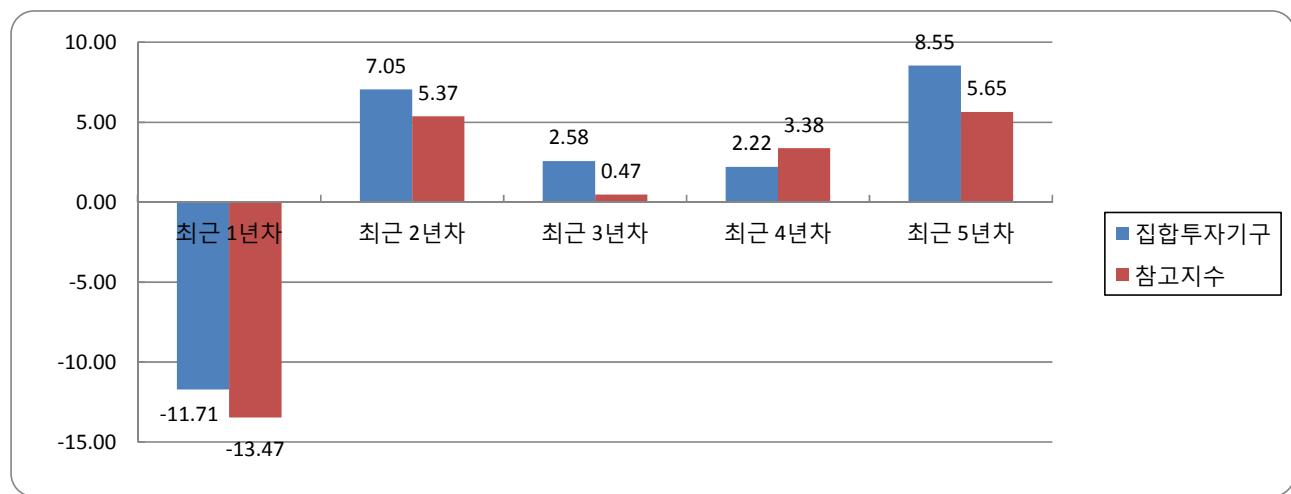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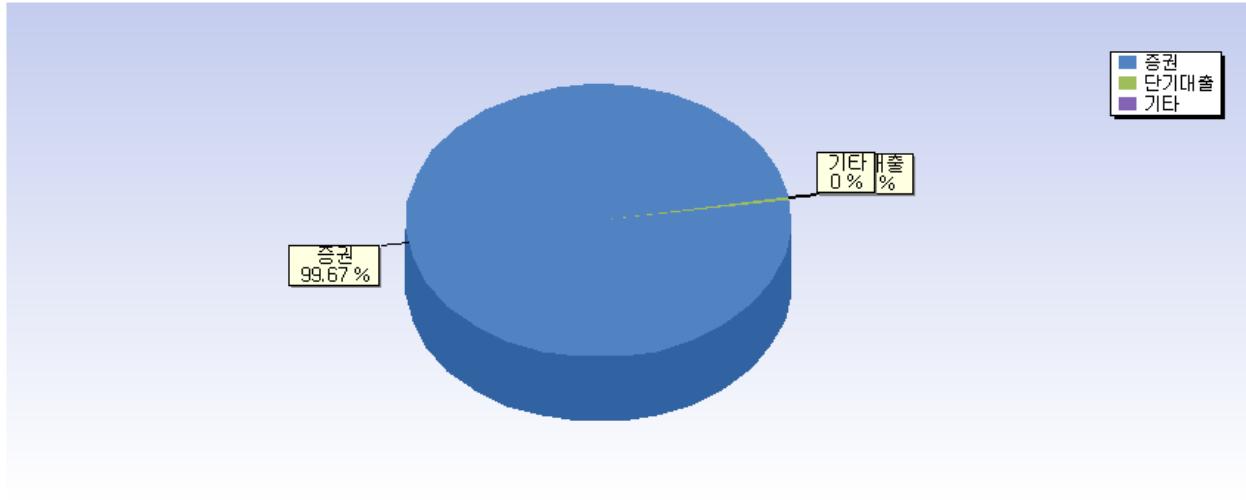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5.08.27 기준, 단위:억 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135	0	0	0	0	0	0	0	136
비중	0.00	0.00	0.00	99.67	0.00	0.00	0.00	0.00	0.00	0.33	0.00	100.00
자산합계	0	0	0	135	0	0	0	0	0	0	0	136
비중	0.00	0.00	0.00	99.67	0.00	0.00	0.00	0.00	0.00	0.33	0.00	100.00

주)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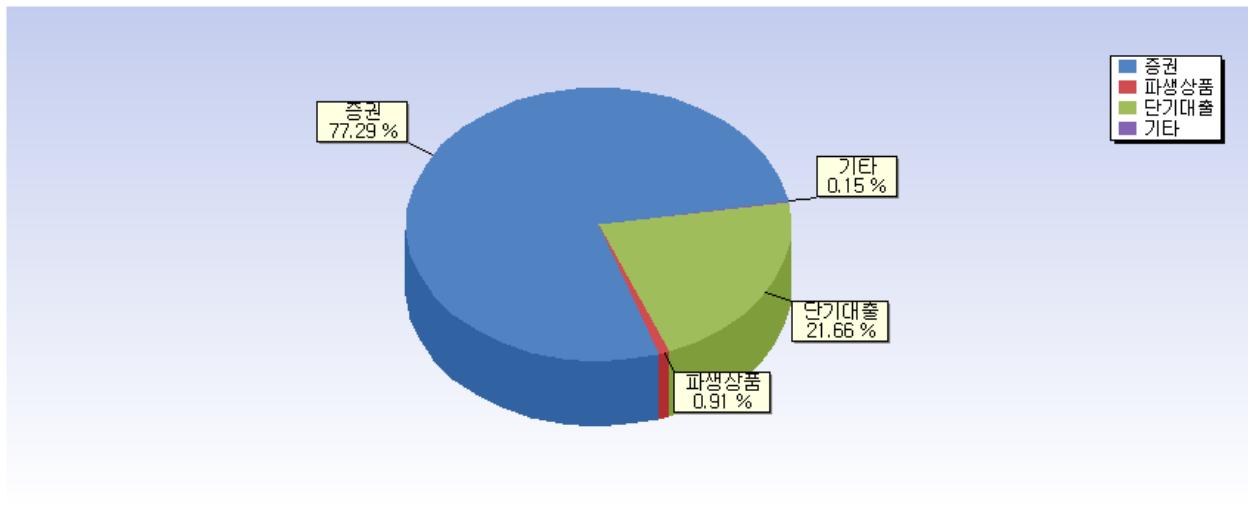
[2015.08.27 기준, 단위:억 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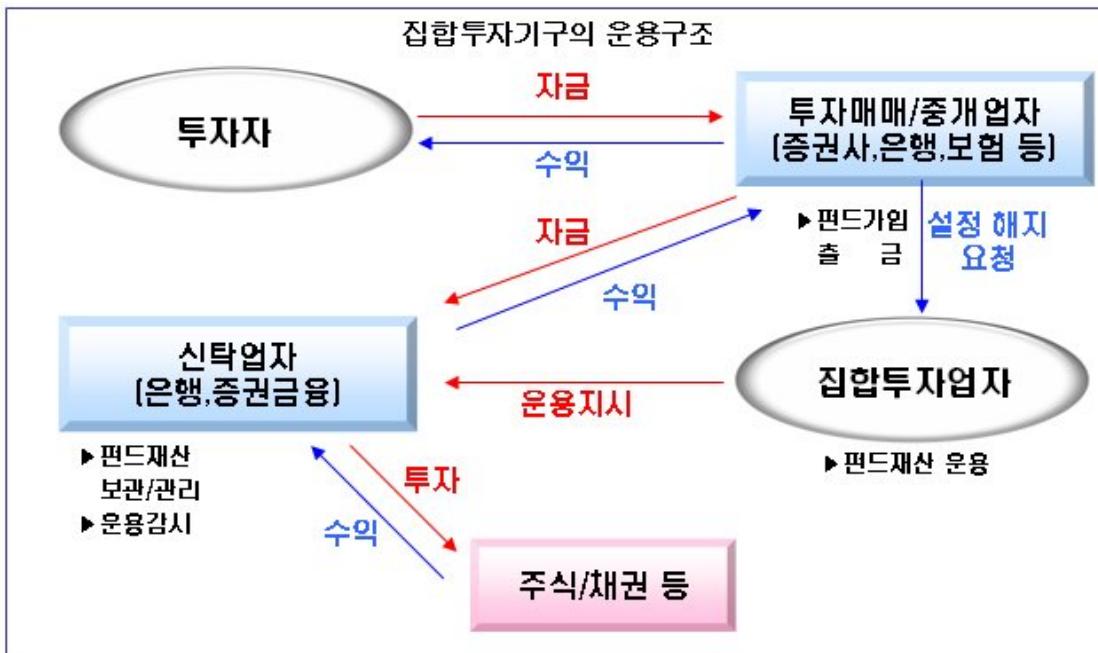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증권						예금		
대한민국	85	0	0	20	1	0	0	0	0	29	0	135
비중	62.80	0.00	0.00	14.48	0.91	0.00	0.00	0.00	0.00	21.66	0.15	100.00
자산합계	85	0	0	20	1	0	0	0	0	29	0	135
비중	62.80	0.00	0.00	14.48	0.91	0.00	0.00	0.00	0.00	21.66	0.15	100.00

주)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여의도동) ☎ 02-2168-7900
인터넷홈페이지	www.yurieasset.co.kr
회사연혁	1998.10 설립일 2001.10 국민연금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1 지방행정공제회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2 삼성생명, 정보통신부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5.01 우리은행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6.02 매경-제로인 선정 '2005 펀드 대상' 특별상 2006.09 국민연금 액티브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04 연기금풀 인덱스형, 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11 보험사 변액연금 인덱스형 운용사 선정 2008.07 국민연금 중소형주식형 운용사 선정 2009.01 유리TREX200 ETF 출시
자본금	153억
주요주주현황	부국증권(주) 99.05% /우리사주조합 0.92% / 기타 0.03%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 17 기	제 16 기	구분	제 17 기	제 16 기
	('14.12.31)	('14.3.31)		('14.4.1~'14.12.31)	('13.4.1~'14.3.31)
자산총계	28,650	26,462	영업수익	6,189	7,250
- 현금및예치금	23,459	20,828	- 운용보수	2,765	3,733
- 유가증권	658	532	- 자산관리수수료	2,364	2,222
- 대출채권	32	157	- 이자수익	438	590
- 유형자산	106	186	-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이익	538	705
- 무형자산	2,645	3,096	- 당기손익인식증권평가이익	84	0
- 기타자산	1,750	1,662	영업비용	5,129	6,141
부채총계	1,601	232	-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손실	429	5
- 예수부채	-	-	- 수수료비용	136	167
- 차입부채	-	-	- 판매비와관리비	4,564	5,969
- 기타부채	1,601	232	영업이익(손실)	1,060	1,109
자본총계	27,049	26,230	영업외수익	94	0
- 자본금	15,300	15,300	영업외비용	48	131
- 자본잉여금	198	1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05	978
- 이익잉여금	11,551	10,732	법인세비용	286	77
부채와자본총계	28,650	26,462	당기순이익(손실)	819	901

라. 운용자산규모

(2015.09.01 기준, 단위: 억)

구분	증권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2,131	3,923	11,937	210	9,872	-	14	-	28,08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대문로2가 9-1 ☎ 1588-9999
인터넷홈페이지	www.kbstar.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동길 43 ☎ 02-6714-4642
인터넷홈페이지	없음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8 (여의도동) ☎ 02)3770-0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 02)739-35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입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

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1항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	산정·작성방법	공시시기
계약금액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 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까지 공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까지 공시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주1)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	매일 공시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주1)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보유포지션의 시장가치×신뢰구간에 따른 표준편차의 배수×포지션의 변동성(표준편차)× 보유기간 으로 산정	매일 공시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기준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주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 상기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선정시 고려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 (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단, 유동성이 없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위의 상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가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증개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증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증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증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증개사의 평가

- 각 운용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증개사를 평가합니다.
 1. 매매체결능력
 2. 증개수수료
 3. 정보제공의 정도
 4. 조사분석자료의 질
 5. 결제이행능력

- 각 운용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중개사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약정배분기준

-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합니다.
 2. 약정집행은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5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5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 합니다.
 2. 약정집행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3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운용부서는 매 분기 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중개회사별 매매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수익증권을 납입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